

〈미국〉

미국의 환경분쟁조정절차는 본격적인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신청자가 EPA CPRC 또는 지방청 분쟁조정 담당자와 면담(case consultation), 갈등평가(convening), 과정설계(process design)와 같은 환경분쟁 조정 착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이 EPA Project Officer와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지를 상담한다(consultation). 그 다음에는 갈등 평가(convening)가 이루어진다.

CPRC 직원과 함께 분쟁의 원인 파악, 분쟁 당사자 확인, 다양한 분쟁조정 절차 중 가장 적절한 방법 선택 등에 대해 논의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PRC의 직원이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중립적 제3자(neutra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립적 제3자(neutral)를 추천한다. 중립적 제3자(neutral)에 대한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중립적 제3자의 소재지
- 신청인이 필요한 분쟁조정 절차의 유형
- 중립적 제3자의 비슷한 분야의 분쟁사건 처리 경험(환경분쟁을 40가지로 분류)
- 분쟁사건의 크기(지방, 주, 국가, 국제적 수준)
- 중립적 제3자가 활동하는 지질학적 범위
-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예) 언어, 10개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하는 복잡한 분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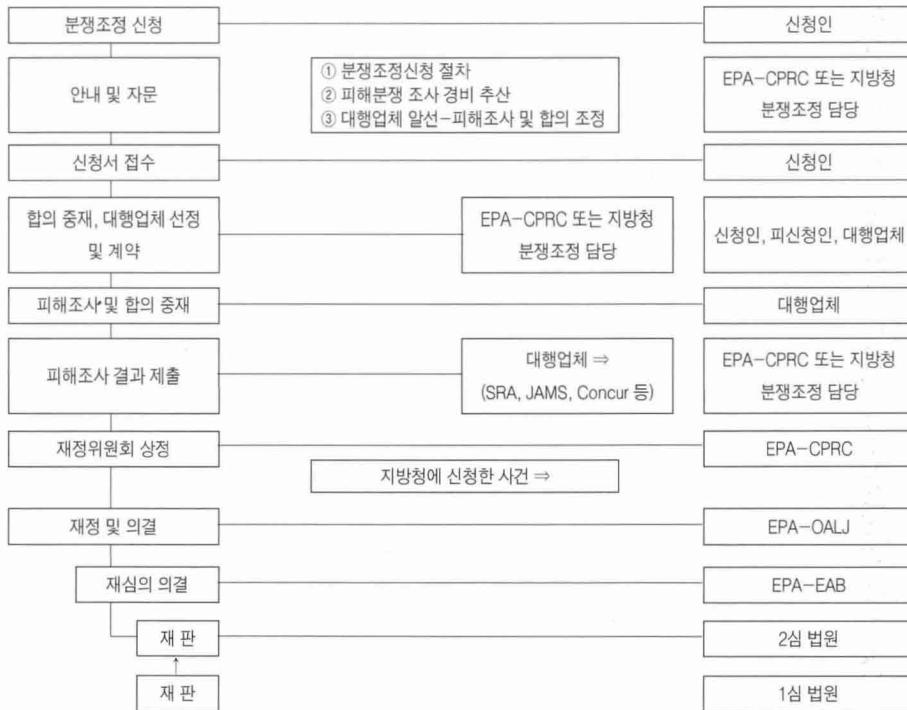
- 중립적 제3자의 전문 분야(환경분야를 18가지 주제로 분류)

중립적 제3자(neutral)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다.

그 후에 EPA Project Officer에게 분쟁조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EPA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다. EPA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분쟁조정 대행사가 분쟁당사자들의 의견, 분쟁과 관련된 손익, 해결방안 등을 청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중립적 제3자(neutral)의 적임자 선정 및 분쟁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과정설계: process design).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대행업체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중립적 제3자(neutral)가 협상, 중재, 조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분쟁을 조정한다.

피해조사 결과와 합의 또는 중재결과를 EPA CPRC 또는 지방청 분쟁조정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단, 재정은 대행업체가 EPA CPRC 또는 지방청 분쟁조정 담당자에게 제출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OALJ)가 시행한다.

[미국 환경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 한국과 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주요 차이 -

제 도	한 국	미 국
조 직	환경부와 시·도로 이원화 · 중앙: 환경부 분쟁위 사무국 · 지방: 시·도 분쟁위 사무국	EPA로 일원화 · 중앙: 환경분쟁사무국(CPRC) · 지방: 지방환경청 분쟁담당
재정위원회 구성	· 위원: 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 9인 · 근무: 위원장 – 상근 · 위원 – 비상근	· 위원: EPA 행정판사 5인 · 근무: 위원장 – 상근 · 위원 – 상근
재정 심의	· 중앙: 1억원 초과 사건 1심재 · 시도: 1억원 미만 사건 2심재(지방 → 중앙)	· 중앙: 한도에 따른 구분 없음 2심재(OALJ → EAB) · 지방청: 재정심의위원회 없음
재정결정 효력	· 법적 구속력 없음	· OALJ: 법적 구속력 없음 · EAB: 1심 재판의 효력, 2심 법원에서 재판
정부관련 분쟁조정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 환경분쟁조정실(US ECR)
피해조사/합의중재	· 분쟁위 심사관 + 외부 전문가	· 분쟁조정 전문업체가 대행
업무범위	· 환경피해분쟁	· 환경피해분쟁 · 정책관련 갈등, 대립 등의 조정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독일〉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중 독일의 경우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재판 외 분쟁해결(Alternative Konfliktregtsformen) 형태에 관한 논의는 민사재판에 대한 대체안을 논하면서 197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소송사건 증가에 의한 민사재판의 부담경감이라는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학자들에 의해 민사재판의 대체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논의의 발단은 법사회학자들이 주도하여, 소송의 범람으로 인한 사법제도의 부담완화의 방법으로 조정, 중재, 법률상담 등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연방법무부와 학자 및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재인을 당사자가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비공개 진행이므로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논의된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이 그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단지 경제적·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진다.

실제 독일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특히 1990년대 전반에 민사소송 제1심의 새로운 소송건수가 급증하였다. 반면 각 주의 세출삭감책의 영향으로 사법예산의 증가는 바랄 수 없기에 재판관 기타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司法簡素化法(1991년 시행)과 司法負擔輕減法(1993년 시행)이 차례로 입법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이에 사법에 부여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사법의 투명성과 분쟁해결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주는 의무적 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9년 12월 15일에 재판외분쟁조정촉진법(Gesetz der Forderung der außergerichtlichen Streitbeilegung)의 제정을 통한 민사소송법시행법(EGZPO) 제15조 a를 개정하여, 각 주법(Landesgesetz)에서 의무적 조정제도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 민사소송법시행법 제14조 a에 의하면, ① 1500마르크 이하의 소액사건, ② 상린관계법에 기한 청구권에 의한 소송, ③ 출판이나 방송에 의하지 않은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권에 의한 소송의 경우에는 주법 즉, 주사법 행정(Landesjustizverwaltung)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승인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항, 고속도로, 철도, 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가운데 조정(調整)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조정은 환경법과 계획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절차로서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건설법전(BauGB)”, “환경영향평가법(UVPG)”, “연방토양보호법(BBodSchG)”, “독립전문가위원회의 환경법초안(UGB-KomE)” 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전적 단계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가 이용되고 있다. ☺

[출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